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8월 21일

○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3. 제안이유

- 노동계 근로자 대비 이용 부대 및 편의시설과 회의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으로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증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고 아직까지 사무실이 없어 입주하지 못한 노동단체(섬유, 한전, 금융연합)의 불만 해소 등 도내 산별노조간의 상호 유대와 협력기반 강화로 노사관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및 그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단체별로 개별입주 등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하고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도 단위 장애인단체들이 한 장소에서 집적됨에 단체간 소통과 화합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회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고자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 매입 및 신축하려는 것이며
-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율량동 일원의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게 되고, 대형 중장비 가동,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도로관리 사업소를 이전하여 민원해소 및 지방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청주시에서 무상사용 중인 도유지(차량등록사업소 부지)와 이전 대상 부지(청주시 소유)를 교환하고 부지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115, 115-23, 115-24번지 3필지
- 사업기간 : 2017. 9. ~ 2018. 12.
- 매입규모 : 부지 1,437m²
- 사 업 비 : 435백만원 (도비 100%)
- 취득사유 :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에 필요한 부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115, 115-23번지
- 사업기간 : 2017. 9. ~ 2019. 7.
- 증축규모 : 991m²(사무실4개, 대회의실, 소회의실, 편의시설 등)
- 사 업 비 : 2,753백만원 (도비 100%)
- 취득사유 : 도내 노동계 근로자대비 이용 부대 및 편의시설, 회의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증축의 필요성 제기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
- 사업기간 : 2017. 9. ~ 2019. 12.
- 매입규모 : 부지 3,700m²
- 사 업 비 : 1,350백만원 (도비 100%)
- 취득사유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
- 사업기간 : 2017. 9. ~ 2019. 12.
- 규 모 : 2,300m²(지하 1층, 지상 4층)
- 사 업 비 : 6,650백만원 (도비 100%)
- 취득사유 :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단체별로 개별입주 등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하고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오랜 숙원사업 해결 및 근무여건 개선

《청주시유지 교환 취득》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248-1, 248-5번지 2필지
- 취득시기 : 2017. 9. ~ 2017. 12.
- 취득규모 : 임야 19,865m²
- 재산가액 : 1,480백만원(탁상감정액)
- 취득사유 :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대상 부지

《사유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산23-1번지 등 5필지
- 매입시기 : 2017. 10. ~ 2018. 12.

- 취득규모 : 임야·답 5,771m²
- 재산가액 : 657백만원(탁상감정액)
- 취득사유 :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대상 부지 내 편입

□ 재산의 처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교환 처분》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7-6번지 1필지
- 처분시기 : 2017. 9. ~ 2017. 12.
- 처분규모 : 부지 1,703m²
- 재산가액 : 937백만원(탁상감정액)
- 처분사유 : 청주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무상 사용중인 충청북도 소유재산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부지 (청주시유림)와 교환 하고자 함

5. 검토의견

-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노동계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들의 이용 대비 편의시설, 회의실, 주차장 등이 부족하며, 사무실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노동단체(섬유, 한전, 금융연합 등)의 불만해소 등을 통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증축하고,
 -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서로 산재해 있어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장애인 단체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회참여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지

매입 및 장애인회관을 신축하고,

-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대형 중장비 가동,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도로관리사업소를 이전하고자, 현재 청주시에서 무상사용 중인 도유지(차량등록사업소 부지)와 이전대상 부지(청주시 소유)를 교환하고 부지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려는 것임.

첫째,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증축의 건은

- 현재 장성동 115-11번지에 부지 2,119㎡, 건물 997㎡에 사무실 4개, 상담실 1개, 다목적실 1개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충북의 조합원수는 약 25,000명으로 14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조합원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1인당 면적은 0.04㎡로 전국에서 가장 협소한 상태로 미입주한 노동단체의 불만이 큼.
- 따라서 보다 많은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노사관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 이를 위해서는 현 부지의 용적률 기준에 따라 추가 부지매입이 필요하여 부지매입과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노사협력을 위해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판단됨.

둘째,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 도내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입주함에 따라 서로 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고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건립이 필요하여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신축하면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통합적으로 입주하여 단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도 단위 장애인단체들이 한 장소에서 생활함에 따라 단체간 소통과 화합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은 총 사업비가 8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으로써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이 필요한 사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당초예산에서 부지매입비 10억원, 2017년 1회추경에서 설계비 2억 7,500만원을 편성·제출하고, 2017년 7월 28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후, 이번 제 35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부지매입비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음.
-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앞서 예산을 편성·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셋째, 도로관리사업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 현재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율량동 일원의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로 과거 도시 외곽에 위치하던 도로관리사업소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게 되었음.
-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 특성상 대형 중장비 가동,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이 초래되어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도로관리사업소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이전대상인 청주시 소유부지와 청주시가 무상사용 중인 도유지(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교환하고 부지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특성에 따른 올바른 사업소 이전이라 판단됨.

붙 임: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